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성명	명노연	배창일	김민경	정영규	이주희
소속	중앙·울산·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위	팀장	대리	센터장	대리	대리
여행국	중국				
여행목적	제4회 아시아 고령자-장애인 권익옹호지원대회 참석				
여행승인 기간	2019.11.28.~2019.11.30. (2박 3일)				
실제여행 기간	2019.11.28.~2019.11.30. (2박 3일)				

목 차

I.출장개요	3
1. 출장목적	
2. 방문국가 및 기관	
3. 출장단원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II.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5
1. 제4회 아시아 고령자-장애인 권익옹호 지원대회	5
2. 면담록 및 방문기관 현황	28
III.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30
IV.첨 부 사 항	32

I. 출 장 개 요

1. 출장목적

- ' 2013년 중앙지원단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년에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
- 또한 ' 2017년에는 정신장애인, ' 2018년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시작으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접근 영역 및 수혜자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 이에 견주어 공공후견지원사업을 국내에서 선두적으로 시작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공공후견제도 및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발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에 모델링화 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확인
- 더 나아가 한국의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의 모범사례를 발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후견업무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업방안 및 기관의 발전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함

2. 방문국가 및 기관

- 방문국가
 - 중국
- 방문기관
 - 중국 르네상스 상하이 중산공원 호텔(대회 개최장소)
 - Shanghai united foundation
 - Jishan Guardianship Group

3. 출장단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팀장	명노연	
	대리	배창일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민경	
울산권익옹호팀	대리	정영규	
경기권익옹호팀	대리	이주희	

4. 출장 기간 및 세부 일정

일 자		여행국 (기관)	수 행 내 용	비고
11.28 (목)	11:10 ~ 14:35	한국→중국	출국	도착시 국내시간 1335
	14:35 ~ 16:00	중국	입국심사 및 숙소이동	출국시, 비행기 연착(1시간)
	16:00 ~ 18:00	중국	호텔체크인	
	18:00 ~ 20:30	중국 (화동정법대학)	환영만찬회 참석	
11.29 (금)	9:00 ~ 20:30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중산공원 호텔)	- 제4회 아시아 고령자-장애인 권익옹호 지원대회 참석 -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및 권익옹호관련 주제발표 - 국외 및 선진기관 자료수집 및 전문가 인터뷰	대회일정 별도 첨부
11.30 (토)	9:00 ~ 15:00	중국 -Shanghai united foundation -Jisan Guardlanship Group	- 기관방문(기관현황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15:00 ~ 17:45	중국 - 공항수속 및 출국수속	- 공항이동 및 관련수속	
	17:45 ~ 20:45	중국→한국	귀국	

II.방문기관별 출장내용 및 시사점

1. 제4회 고령자-장애인 권익옹호 지원대회 참석

1) 행사일정표(2019.11.29.)

행 사 일 정	세 부 내 용
8:30 ~ 9:00	Registration
9:00 ~ 9:30	Welcome Address Moderator: Yongjie Wang (ECUPL) -Yinlan Xia, Director of Marriage and Family Legal Research Institution of China Law Society, Professor and doctoral tutor in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Mingjun Zhang, Vice President, Professor and doctoral tutor in ECUPL -Changlin Yang, President of Shanghai Notary Association -Dongpin Lin, Vice president of Shanghai Bar Association
9:30 ~ 10:40	Session 1: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PD12: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Moderator: Professor Faqiang Yuan (ECUPL) -Shoichi SATO (Japan) Guardianship and CRPD in Japan -Adrian D Ward (Scotland, UK) What CRPD Article 12 actually requires is support for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Cheolung Je (South Korea) Peer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s in Korea -Zhuqing Wang (China) Analysis on general comment No.1 of CRPD
10:40 ~ 10:55	Tea & Coffee Break
10:55 ~ 12:20	Session2: Supported Decision-Making: Exploration, Experience and Challenges Moderator: Professor Yinan Ma (Peking University) -Daniel Rosch (Switzerland) Switzerland Adult Protection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David English (USA)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US, in Missouri, and Beyond -Hisashi Tanab (Japan) Regarding Activities of the daily life independence support project, and Other Activities -Tina Minkowitz (USA) Supported Decision-Making as an

	Alternative to Forced Psychiatric Interventions - Myoung Noyeon (South Korea) Public Guardianship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12:20 ~ 13:45	Lunch
13:45 ~ 14:55	Session 3: The Role of Courts and Social Organizations in Adult Guardianship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Moderator: Professor Kang Wang (SHUPL))
	- Regina Chang (Singapore) Protecting & Supporting –Beyond Pen and Paper 超越“筆和紙”的保護与協助 - Hongjun Qiao (China) The role of parents-organization in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guardianship - Kenta Fukushima (Japan) The Role of the Family Court and Social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Adult Guardianship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 Kwang Youl Bae (South Korea) The Role of Korean Professional Guardian for the Right Use of the Guardianship System: On the basis of practices
14:55 ~ 15:50	Session 4 (1) : Enabling Citizens to Plan for Future Incapacity Moderator: Professor Jun Li (ECUPL)
	- Esther Tan (Singapore) Special Needs Trust – –Why It Matters? - Adrian D Ward (Scotland,UK) Enabling citizens to plan for incapacity: the European experience and developments - Yuanlong Li (China) Exploration of the Guardianship Trust Service Development in China
15:50 ~ 16:05	Tea&Coffee Break
16:05 ~ 17:15	Session 4 (2) : Other Issues Moderator: Vice Professor Xin Li (Jiangnan University)
	- Chenyang Li (China)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Adult Guardianship in Shanghai - Takashi OKA (Japan) A Proposal Regarding “Contract for Support” - Weirong Qian (Japan) Tort of Persons Without Capacity for Liability And Adult Guardian’s Liability Towards Victim

	- Qinyu Liu (China) Research on Law Application of Foreign-related Voluntary Guardianship
17:15 ~ 17:30	Closing Moderator: Professor Jizi Cui (ECUPL)
	- Professor Xia (Lisa) Li (ECUPL)
17:30 ~ 17:45	Gather
18:00 ~ 20:30	Dinner

2) 세부내용-1(세션 1)

세션1.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PD12: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CRPD 제12조에서의 장애인의 법적능력: 정책과 법률의 구현)
주제	Guardianship and CRPD in Japan (일본의 후견과 CRPD)
발표자	Shoichi SATO (Japan)
관련내용	○ CRPD를 비준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않음. ○ 일본에는 후견, 보좌, 보조 3가지의 유형이 있음(한국의 성년, 한정, 특정후견). 80% 이상이 후견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피후견인의 법적능력이 극도로 제한됨을 뜻함. 이에 일본의 후견제도는 CRPD 제12조와 상충됨. 하지만 일본정부는 법적능력에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능력만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1세 미만의 아동과 90세 이상의 노인 역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나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후견인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후견제도가 필요함. ○ 즉, 일본 정부는 CRPD 제12조 2항에서 권리능력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행위능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은 당사자 재량에 따라 CRPD 제12조 3항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제도가 만들어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일본 민법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피후견인의 권리, 의도 및 선호를 존중하는 제도’라고 UN에 설명함.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해석은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일본의 지원 의사결정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하지만 UN의 해석은 대체 의

	사결정제도지만 일본 정부의 해석은 제12조의 목적을 완전히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원 의사결정은 대체 의사결정 내에서 제공된다고 해석함. ○ 일본 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일본 정부의 해석 하에 수행되고 있음. 하지만 보호자들은 의사결정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음. 이에 후견인에 대한 지침이 존재함. 지침에 따르면 지원 의사결정은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며, 복지 담당자 및 법률 전문가와 같은 여러 이해 관계자가 고려한 지원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의사결정이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함. 또한 지원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어떤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함. 하지만 본 지침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음. 이유는 가정법원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한편, 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5년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후견인을 지원할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지만 아직 실행단계는 아님. ○ 이전에는 치매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CRPD 비준 이후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법적능력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후견제도는 지원과 대체 의사결정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주제	What CRPD Article 12 actually requires is support for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CRPD 제12조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 역량 발휘에 대한 지원)
발표자	Adrian D Ward (Scotland,UK)
관련내용	○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총 3개의 법 체계가 존재함. 16년 3월, 3개의 법을 준수하는 권고안을 제시함. ○ 영국에서는 상대방이 무능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효화 할 수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1조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에 명시되어 있듯이 ‘should’ 반드시 라는 말. 이는 분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규정함을 뜻함. ○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유럽인권조약 14조에는 ‘장애인’의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음. CRPD 제1조에는 ‘include’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며, 제12조 4항에서는 ‘safeguard’ 즉, 안전장치와 체결국

	의 의무 및 위원회의 감독을 명시하고 있음. ○ 12조 4항의 안전장치는 가능한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며 불가능할 경우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함을 뜻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2조 2항 완전준수, 지원 받는자에 대해 법적 역량 발휘, 과한 보호는 차별 행위로 이어진다고 강조.
주제	Peer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s in Korea (정신질환자를 위한 동료 지원 서비스 및 지원 의사결정지원)
발표자	Cheolung Je (South Korea)
관련내용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지원 전제 ○ 성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자기결정은 존엄성과 연결됨. 자기결정을 통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결정 ○ 의학적 치료 환경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증상, 질병의 원인, 치료방법,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함. 환자는 치료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러나 긴급시 사전 동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 ○ 비자발적 치료의 경우 법적 조항이 있어야 함. 한국에서는 정신보건법은 질환으로 인해 입원의 필요성과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함. ○ 사전 동의 없이 치료를 하거나 간호를 받는다면 의사와 상관없이 상처가 발생함.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지원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응급 상황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치료를 할 수 있음. ○ 구법(정신건강법)과 신법(정신건강복지법)의 차이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 - 비자발적 입원 ○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및 복지법의 제한 ○ 최후의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 자발적 입원 및 비자발적 입원은 실현되지 않음. ○ CRPD 제14조를 위반하고 있음. ○ 새로운 법에 따라 자기결정, 지원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삶을 위한 지원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임. ○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 지원 의사결정 체계 - 치료에 대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가족 및 직업 관련 문제, 입·퇴원, 치료 관련 건의사항, 타인과의 교류, 퇴원 후 계획 등 관련 의사결정 지원 ○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원 인력 - 동료지원자(peer supporter)와 함께 같이 회복하고 공감대를 형성 - 사회복지사 및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변호사의 지원 없음 -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의 절차상 적법성은 병원 입원 심사위원회에 의해 보장될 수 있지만 병원의 결정을 통해 입원이 가능함. - 입원 심사위원회는 변호사, 판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사람은 언제든지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변호사가 관여할 필요는 없음. 지원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범죄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과 유사함. ○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사결정 계획 및 기타 계획 지원 ○ 동료지원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 ○ 환자를 만나고 입원 및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특히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함 ○ 비자발적 입원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 자발적 입원 또는 다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기 개입 -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주제	Analysis on general comment No.1 of CRPD (CRPD 제1호 일반적 분석)
발표자	Zhuqing Wang (China)
관련내용	○ CRPD 제12조는 법 앞의 평등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법 앞에 일반 사람들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권리의 대상이며, 권리를 즐기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당사국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 ○ CRPD 제12조의 협상 배경은 법적 능력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8차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합의되지 않았음.

- 위원회는 장애인의 평등한 인식을 법적 능력에 대한 동등한 인정으로 구체화하고, 법적능력이 존재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적능력을 가지며, 법적능력이 박탈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장애가 있는 사람 역시 투표, 결혼, 출산의 권리를 가져야 함.
- 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함.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후견인이 대신하여 결정하는 후견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지원 의사결정제도로 변경하도록 요구함.
- 위원회는 후견인들이 피후견인들을 지원할 때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에 기초해야하며, 최선의 이익에 기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위원회의 핵심 견해
 -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 정신적 능력의 부족은 법적 능력의 부족과 같지 않으며, 당사국은 정신적장애인을 지원해야하며,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지원 의사결정제도로 변경해야함.
 -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의지와 선호로 변경해야함.

- 법적능력
 - 법적능력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포함함.
 - 위원회는 법적능력이 선천적이고, 평등하다고 주장함.
 - 민사능력에는 법적능력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규정이 있음.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은 선천적이고 평등하다고 규정하지만, 행위능력은 일정한 조건하에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행위능력을 인정한다면 계약, 결혼, 상속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행위능력을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할 능력이 있는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 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 정신적 장애인도 형사책임을 져야하나? 아니라고 강조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 대두
 -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이 행위능력의 부족은 아니라고 강조
 - 법률적 시스템은 단순하며, 이론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복잡한 관

계가 없음. 위원회에는 법률 전문가가 1명뿐이며, 민법이 아닌 국제법 전문가임. 따라서 법적능력을 논할 때 민법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법적능력에 대한 위원회의 생각은 전문적인 것 보다 정치적인 것. 따라서 중국의 후견제도의 개혁은 법적능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함. 법적능력과 행위능력을 동등하게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제안을 채택해서는 안 됨.

○ 정신적 능력

- 위원회는 정신적 능력이 법적능력과 다르다고 생각함.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적능력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없음.

- 정신적 능력의 법적규정은 무엇인가? 정신적 장애인만 지원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들의 의무와 책임, 또는 부담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가 일관된 법적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 대해 위원회는 답변하지 않았음.

- 민법에는 정신적 능력과 행위능력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정신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행위능력에 제한됨.

- 행위능력의 제한은 의사결정능력을 박탈하는 것과 같지 않음. 그 이유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임. 행위능력의 제한은 정신적 장애인의 객관적인 상태의 법적 표현임. 근본적인 목적은 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자는 것임.

- 실제로 정신적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실행 불가능한 법의 문제임.

○ 지원 의사결정제도?

- 지원 의사결정제도는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 지원 의사결정제도는 정신적장애인이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임. 정신적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음. 이 상황에서만 지원 의사결정제도가 적용됨.

- 식물인간, 정신질환자와 같은 중증의 경우 지원을 하여도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음.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수술 여부와 치료 계획 등 다른 사람이 한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완전히 대체 의사결정제도에서 지원 의사결정제도의 변경은 불가능함. 일부 인정하지만 완전한 변경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며, 현실적이

지 않음.

-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 많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과 같은 이해력과 판단능력을 넘어서는 분야에서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후견인이 필요함.

-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의지와 선호도의 존중

- 위원회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지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는 지원 의사결정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의 범위와 목적의 혼동을 야기함.

- 이론적으로 지원 의사결정제도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본인의 능력을 넘는 범위에서 후견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함.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지와 선호를 고려해야 하지만, 피후견인은 본인의 결정이 아닌 후견인의 결정을 부인할 수 없음.

- 차이는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후견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

- 위원회는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의지와 선호로 완전히 대체할 것을 옹호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님.

- 비장애인 사람들의 의지와 선호는 합리성에 의해 제한됨.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선호를 존중한다면, 흡연, 음주, 건강에 극도로 해로운 경우와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의지와 선호도의 존중은 본인 및 재산의 안정성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전체에 기초해야 함.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기본적 이익으로 변경되어야 함.

○ 결론

- 지원 의사결정과 지원되지 않는 의사결정의 차이점이 명확해야함.

-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정신적 장애인

	을 위한 다른 지원은 각기 다른 정도로 설정되어야 함. - 지원 의사결정제도는 대체 의사결정제도와 다름. 지원 의사결정제도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부여야 함. - CRPD 제12조는 인정할 가치가 있음. 정신적 장애인들 역시 존중받고 자유와 존엄성을 향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탐색해야 함. 위원회가 제시한 법적능력은 현재 중국에 장애물이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모색.
--	--

3) 세부내용-2(세션 2)

세션2.	Supported Decision-Making: Exploration, Experience and Challenges (지원되는 의사 결정: 탐색, 경험 및 과제)
주제	Switzerland Adult Protection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스위스 성인 보호 및 지원 의사 결정)
발표자	Daniel Rosch(Switzerland)
관련내용	○ 스위스에서는 성인의 보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CAPA) 운영. ○ CAPA의 경우 수행기관이며,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은 따로 있으며, 주(州)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음. CAPA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변호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이의제기를 요청. ○ 운영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요구와 욕구확인(의학적 지원 포함), 이후 사회복지 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리스트를 파악하여, 자료를 의뢰인이나 당사자에게 제공. 이에 의뢰인의 의사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의사지원을 수행. 그밖에 사회복지제공서비스와 실천과정의 정보로 기관을 평가하며, 반대로 후견인이나 지원인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 ○ 후견인은 후견대표권. 즉 한정된 대리권을 가지고 지원을 하며, 의뢰인이나 피후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통한 공동적인 계약을 성립시킴. 이 과정에서 의사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인 의뢰인이나 피후견인의 대리인(ex:후견인)과 완전한 후견 및 대체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 부각되며, 기관과 갈등적인 소지가 다양. ○ CPAP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함. 스위스의 법 자체가 인간중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성인의 보호(Care)는 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권한으로 법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 ○ 루체인법 제40조 1항에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함. 외부적으로는 의뢰인이 권한위임을 통하여 대행이 진행되며,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의 자발적인 지원이나 존중을 통하여 진행. ○ 스위스법 제309조는 의뢰인의 동의하에 후견인의 보좌와 지원이 이뤄져야 함. CRPD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함. 후견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보좌와 지원 시, 능력이 있는 부분을 보좌와 지원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어야 함. 하지만 이것은 CRPD에 부적합.
주제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US, in Missouri, and Beyond (미국, 미주리에서 지원되는 의사 결정)
발표자	David English(USA)
관련내용	○ 미국의 후견법 관련 역사는 텍사스의 SDM 관련법(의사결정 지원 관련법)을 연구하고 제정하는데 선구적이었음. 법안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강하며, 조례는 차선으로 제정하자는 것이 주(州)의 의견임. 다만 미국이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움. ○ 미주리에서는 후견법이 있었으며, 2018년에 개정할 때,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자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함. 또한 실행 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실천과정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지원팀의 형식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 운영방식으로는 펀딩을 통한 재정확보를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직접적으로 후견인과 조력인을 매칭하는 등의 직접서비스도 동시에 수행함. 또한 현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 확보와 지원방법을 모색.
주제	Regarding Activities of the daily life independence support project, and Other Activities (일상생활 독립성 지원사업의 활동 및 기타 활동)
발표자	Hisashi Tanab (Japan)
관련내용	○ 일본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99년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과 상관없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단독으로 운영. 개인이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제한이 있다면 계약을 통하여 의뢰인이 재무관리 및 관련 현안을 지원하며, 50만엔을 기준으로 이하의 경우에는 대행하지만, 이상의 경우에는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대행이 가능. ○ 또한 생활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역사회 복지차원에서 기관과 후견인의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지원을 할 때에는 판단능력(의사소통, 이해능력, 조언 시, 의도의 파악, 계약기간 유지능력, 기관에 대한 요구능력, 합리적 행동의 수행능력, 사전사후 인터뷰에 따른 일관성 등)의 여부가 중요하며, 굳이 판단능력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스스로 의사결정. ○ 기관의 주된 역할로는 재정관리 및 당사자의 권리행사 지원, 장애인 권리보장 및 일상생활의 지원, 성인보호사의 보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성, 전국차원의 전문가 배치가 있으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더 나아가 의뢰인이 요구가 공동체 및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
주제	Supported Decision-Making as an Alternative to Forced Psychiatric Interventions (강제적 정신의학개입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사결정 지원)
발표자	Tina Minkowitz (USA)
관련내용	○ 성인장애인은 일반사람과 동등한 법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CRPD에서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대리보다 지원에 더 비중으로 두고 있는 상황. ○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정부, 기관, 공적인 영역), 비공식적(개인의 계약)인 접근을 통하여 의사결정지원을 수행.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의사결정지원 및 관련 권한의 대행시에는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CRPD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함. 이익에 대한 침해 시에는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관리감독이 필요. ○ 페루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강제구금 사례가 많음.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적 관점에서 강제입원과 강제투약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음. 사람들은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적 안정상황을 추구하며,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이미 CRPD제19조(제19조는 제12조의 보완적인 시스템)에 보완적인 시스템

	으로 추구해야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관점으로 위험요소의 감소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협의가 필요. ○ 파일럿 프로젝트: 안전한 상황, 비차별, 정서적 안정이 필요시에는 소통과 사전기획을 통하여 사후보정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하며, 다양한 욕구의 발생시에는 사전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며, 후견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의학적 지식이 필요.
주제	Public Guardianship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한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과 권익옹호)
발표자	Myoung Noyeon (South Korea)
관련내용	○ 한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으며, 이는 2015년 11월에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운영(중앙센터: 1개, 지역센터: 17개 운영 중) ○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에 대한 지원도 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임. 또한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성년후견제도 안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후견유형 중에서 특정후견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현존능력의 존중, 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의 발굴과 심판의 청구(법원에 소장 제출), 후견인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법률상담 및 자문, 법원에 소장제출을 위한 서류작성, 관련 사후조치 및 필요사항을 지원(2016년: 119건, 2017년: 366건, 2018년: 450건). ○ 그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권리구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법 제12조~제17조에 명시. ○ 권리구제의 주된 목적으로는 당사자가 일정한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 또는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임. 주된 내용으로는 상담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현장방문, 피개

	하제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 지원을 수행. ○ 2018년에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부모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
--	---

4) 세부내용-3(세션 3)

세션3	The Role of Courts and Social Organizations in Adult Guardianship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성인의 보호와 지원 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원과 사회조직의 역할)
주제	Protecting & Supporting –Beyond Pen and Paper (보호 및 지원-펜과 용지 너머)
발표자	Regina Chang (Singapore)
관련내용	○ 싱가포르 또한 다른 아시아 지역과 달리 싱가포르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음. 이에 MCA 시스템이 2008년 시행되고 2010년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공공후견청이 설립되고, 법원에서 대리인을 임명하고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됨. 또한 CRPD 26조 당사자 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결정능력이 부족 할 시 당사자를 위해 의사결정 가능 ○ 이용 가능한 기술로는 온라인 LPA(Lasting Power of Attorney)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 기관에서 원스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일반인은 LPA를 만들고 사용하여 보고서를 제출. 또한 이용자를 위한 정확한 등록 및 부감독 시스템 구축 ○ LPA의 감독으로는 단순화 된 법원 신청 절차(iPAMS)가 있으며, 이는 LPA 수가 8배 이상 증가했으며, 담당자가 모두 직접 처리하기에 제한이 있어서, 2018년에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구축 결정. ○ LPA의 대리인 및 지원자들에 의무와 보상으로는 훈련을 통한 개선, 대리인의 조기 개입하는 것이 있으며, 법원은 대리인이 특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 ○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순환체제로는 개입 기관 간 사례회의 진행이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친 평가 및 중재를 제공하고, 학대 사건의 조사를 조사 및 관리를 강화를 목적으로

	로 하며, OPG, APS, 경찰, 의사 등을 중심으로 보호팀을 구성. ○ 법령 이외 기타의 방법으로는 LPA 의미를 법 밖으로 가져오기 위해, LAP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라디오, 소셜미디어, 디지털 광고 홍보, 캠페인 등으로 홍보 필요 ○ 결론: 싱가포르의 다문화 아시아 국가도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족 중심의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중점을 둬.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주제	The role of parents-organization in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guardianship (후견제도에서 부모단체의 역할)
발표자	Hongjun Qiao (China)
관련내용	○ 중국내 후견의 한계점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후견제도만으로는 장애 자녀에 관한 걱정을 여전히 해결 할 수 없다는 부분’과 ‘최근 부모와 자녀가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자녀만 사망’, 그리고 ‘부모들의 불안감 중 53%가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30%가 본인 사망 후에 대한 걱정’이라는 크게 3가지 내용을 구분. ○ 상하이 내 1,700여개의 부모단체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부모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정책연구, 포럼, 캠페인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후견제도 관련하여 부모단체의 역할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주장자,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후견제도 및 방향성 홍보, 조력 의사결정제도 관련 법 추진, 개정에 관여, 후견업무 시 정보제공 등 기여자,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향후의 목표. ○ 부모단체의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으로 서비스, 재원 등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관여해야 할 부분과 중국내 신탁제도 신설.
주제	The Role of the Family Court and Social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Adult Guardianship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성인의 보호와 의사결정지원을 고려한 가정법원과 시민단체의 역할)
발표자	Kenta Fukushima (Japan)
관련내용	○ 성년후견제도 중 개인계약(임의후견)은 제외하고 법정후견만 고려함 ○ 현재 성년후견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 - 과거에는 후견인의 욕구에 맞춰서 대리권을 지정했으며, 후견인의 업무지원이나 감독도 없었음 - 후견관련 법상 본인의 의사존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

	로 피후견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전문 지식과 인력이 부족하여 감독이 충분하지 않음 - 특히 보호자 유형(가족후견)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서만 대리결정 ○ 법 개정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현재 현행제도 중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법원의 판사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과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가이드라인 제작 중 -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 ○ 오사카의 사례 - 장애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은 의사결정대리를 수행하기 위해 팀을 구성 - 후견인은 주변 상황에 따라 협력하여 의사결정조력을 위한 방법 검토 ○ 비영리기구 및 사회복지시설 같은 법인에서 후견을 할 경우도 고려를 해야 함 -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자문 - 시민보호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할 필요 - 보호자는 후견인 선임 후에도 조력·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지원필요 ○ 의사결정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
주제	The Role of Korean Professional Guardian for the Right Use of the Guardianship System: On the basis of practices (후견제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전문후견인의 역할: 관행에 근거하여)
발표자	Kwang Youl Bae (South Korea)
관련내용	○ 한국의 후견제도 현황 - 한국은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했으며, 2018년 까지 총 16,472건의 후견이 개시 됨 - 장애, 치매 인구에 비했을 때 제도의 이용율이 높지는 않음 - 2014년 1,518건에서 2018년 5,462건으로 3.5배 증가한 사실을 보면, 급격하게 이용율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됨 - 성년후견 2,533건, 한정후견 1,864건, 특정후견 1,321건 - 임의후견의 경우 31건으로 상당히 낮음

Type Year	Total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Contracting Guardianship ¹
3 201	723	(Statistics by types of guardianship do not exist)			
4 201	1,518	1,152	146	218	2
5 201	2,087	1,653	172	256	6
6 201	2,558	2,274	192	84	8
7 201	4,124	3,245	571	295	13
8 201	5,462	4,209	783	468	2
1 Total	16,472	12,533	1,864	1,321	31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

○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 한국은 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하여 정부에서 후견 개시, 활동 지원, 감독, 후견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후견을 활용하여 피후견인을 지원하고 있음
- 201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 2018년 치매노인까지 확대
- 한국도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고있어 공공후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갈 것으로 추정

○ 전문후견인 현황

- 제3자후견인 유형
 - 후견인은 크게 친족후견인과 제3자후견인이 있으며, 후자는 전문후견인이라 함
 - 공공후견인의 경우 전문가집단에서 후견인 후보를 양성하고 있음
- 전문후견인이 선임되었을 때
 -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후견인은 주로 피후견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될 때 선임 됨
 - 가족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제3자 후견인 선임 현황
 - 전문후견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성 및 확보가 대두

○ 한국의 조력의사결정제도 도입 추진

- 제5회 서울 세계성년후견대회 이후의 변화
 - 한국에서도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LPA와 유사한 조력의사결정제도 도입 제안
 - 2018. 10. 세계성년후견대회 한국 참가자들이 ‘서울선언’ 채택

- 세계동향이 성년후견제도의 설립보다 의사결정지원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
 - 후견인 등 조력의사결정제도에 관한 기본법 제장을 위한 국회제안
 - 2019. 5. 국회에 후견인을 포함한 조력의사결정제도 관련법을 제안
 -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후견제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조력의사결정제도 수립계획 중
 - LPA 시범사업
 - 2019. 1. 한국후견학회에서 노인을 위한 신탁계약체결 및 LPA와 유사한 간병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 한국의 생명보험회사의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2개의 신탁계약 체결
 - 성과 자체는 크지 않지만 초기단계에서 의미 있게 볼 필요
 -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사조력 시범사업
 - 2016년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시 절차보조자를 임명해야 함 권고
 - 강제 입원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수립
 - 2018년 하반기부터 자의입원 한 정신장애인 누구라도 절차보조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함
- 조력의사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전문후견인의 역할
 - 조력의사결정제도 도입 시작 단계에서 전문후견인의 역할
 -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요구해야 함
 - 국가에서 제안 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협력
 - 전문후견인 간 활발한 토론과 연구 수행
 - 후견업무 수행 시 역할
 - 피후견인의 요구에 관한 원칙 준수
 - 상담 및 지원 시 조력의사결정제도를 고려
 - 대리권 행사 시 피후견인의 권리를 최소 수준으로 제한

5) 세부내용-4(세션 4)

세션4-1	Enabling Citizens to Plan for Future Incapacity (권한을 받은 시민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주제	Special Needs Trust -- Why It Matters? (특수한 욕구의 중요성)
발표자	Esther Tan (Singapore)
관련내용	○ SNTC(싱가포르 특별수요 신탁센터)의 역할 -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탁센터를 운영하고 있

	음. 주된 투자와 신탁의 목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가장 큰 목적으로는 보호자의 사망시, 당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음. 만약에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유언이나 공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지원방안을 활성화 하고 있음. 또한 필요시, 관련 내용을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전체적으로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수행. - 대표적인 사례가 2가지 있음. 하나의 경우에는 중복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사전에 후견신탁을 신청하고, 사후 신탁의 수요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부모의 사망시 친척이 SNTC에 상속재산을 편당하고 당사자의 재산관리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 사례로는 부모의 사망이후 지적장애인 당사자로 거액의 현금과 부동산이 상속되었으나, 과소비로 인하여 현금을 대부분 소진 함. 이에 주변인의 지원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SNTC에 맡김에 따라, 재산보존의 개념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 -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상속재산의 안정성을 위해 주로 센터를 활용
주제	Enabling citizens to plan for incapacity: the European experience and developments (사전 의사결정지원의 확보-유럽의 경험과 발전)
발표자	Adrian D Ward (Scotland,UK)
관련내용	○ CRPD 제12조 4항의 내용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이는 후천적 장애인이, 장애를 갖기 전에도 허용되는 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발표자는 2018년에 유럽평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편찬 및 집필을 할 때,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 ○ 유럽에서는 관련내용을 편찬하고 집필할 때 ‘당사자의 자발적 조치’, ‘당사자의 비자발적 조치’, ‘제3자 조치’로 구분. 그 중에서 당사자의 자발적 조치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공권력(법, 법원 등)등을 통하여 미래를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발적 조치’는 일종의 후견으로 의사무능력자를 대상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제3자 조치’는 신탁이나 제3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로 계약을 통한 위임이나 지속적 지원이 주된 내용임. - 3개로 구분되어 있지만, 자발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단체에서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자발적 조치에 대해서 적

	극적 홍보를 실시함. - 위의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CRPD의 목적과 충분히 상충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후견수요 발생시에는 전문가를 통하여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함. - 계약후견을 진행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며, 웨일즈과 스코틀랜드에서 법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지원할 때, 당사자의 법적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 이는 제도의 다양한 목적의 실현과 성과를 실현 할 수 있는 좋은 전제조건임. - 이에 따른 피후견인의 역할이 효과적이면, 후견인이나 다른 전문가 등과 공동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후견인의 단독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정영역에서 다른국가들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헤이그협약 제35조에 근거하여 마련해야함.
주제	Exploration of the Guardianship Trust Service Development in China (중국의 후견신탁서비스의 발전)
발표자	Yuanlong Li (China)
관련내용	○ 중국의 후견신탁서비스는 노후에 대한 대책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보호의 욕구로 시작되었으며, 5~6년전부터 시행됨. 주로 자산의 보존이 주된 목적. ○ 신탁서비스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후견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노후에 불안감으로 인하여 신탁회사를 찾아, 미래에 대한 재산보존의 차원으로 이용. ○ 중국에서 국가신탁법이 있어, 위탁자의 자산기획, 신변보호, 개인과 가정의 보호를 하고 있으며, 법적보다는 재정적 측면의 내용과 비즈니스적, 상업적 측면의 내용이 상당함. 이와 같은 사유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후견신탁서비스를 이용함. ○ 중국의 경우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후견인 시스템이 미약하고, 신탁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후견과 신탁을 결합하는 제도가 있어야 함. 왜냐하면 신탁회사에서 처리하는 자산에 대한 객관성이나 법적 권한이 신탁회사에는 없기 때문임. 그래서 신탁과 후견의 다양한 측면에서 루트를 개발하여 신탁과 후견이 결합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더군다나 수요자가 신탁회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인의 재산확인과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탁과 후견이 결합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신탁서비스는 공공의 성격보다는 금융업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업무의 성격을 살려, 싱가포르의 SNTC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더 나아가 공증기관과의 협업, 수혜자의 욕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신탁의견을 반영하는 것 또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문가 후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직접서비스를 통하여 신탁서비스와 협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또한 후견과 신탁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관리감독을 수행하되, 상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함.
--	---

6) 세부내용-5(세션 4-2)

세션4-2	Other Issues (기타이슈)
주제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Adult Guardianship in Shanghai (상하이 성인지후견의 특성)
발표자	Chenyang Li (China)
관련내용	○ 2007년에 중국 민법총칙에 후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및 언론 등에서 계약후견과 관련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함. ○ 중국에서 계약후견이 대두된 이유로는 당사자의 의사존중, 현실성, 법적원칙 및 사법안전성이라는 4가지의 이유가 있으며, 이중에서 법적원칙 및 사법안전성은 관리감독의 의미까지 갖고 있음. ○ 계약후견의 경우는 공증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으며, 법원에서도 공증기관에서 지원받아 후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후견인과 후견인 사이에 일종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소송과 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짐. 이는 후견 개시 이후 법원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기 위한 목적임. ○ 피후견인이 공증기관이나 법원을 통하여 사전사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지만, 중국내에서 후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발전은 미비한 상황임. 그래서 공증기관은 공권력과 개인권리의 보장 등의 일종의 사법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나 개인권리의 보장에서 공공신탁의 연결까지 진행함. ○ 중국의 계약후견 신청방법으로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사실 및 자격 확인을 통하여 법정후견인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증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대다수임(주로 발달장애인의 부모, 미혼모, 덩크족, 독거세대가 신청). 현재 중국에서는 공증관련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적 성향이 강함. 즉, 공증기관이 법적 서비스와 사법관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후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ex: 후견 등 기시스템 구축, 후견증서발급, 공공신탁의 기능, 법원에 후견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요청 등)을 수행함. 또한 공증관련기관에서는 비송관련 서류를 관리하면서, 법원이 후견내용의 변경 및 상향조정, 위탁 및 요청 등의 사유로 서류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향후 중국의 계약후견 발전방향으로는 당사자가 민사능력이 상실될 경우 공증기관에서는 다른 공공성을 가진 기관(ex: 지방자치단체)과의 접목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입법체계(일본의 후견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 후견관련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주제	A Proposal Regarding “Contract for Support” (‘지원에 관한 노력’에 대한 제안)
발표자	Takashi OKA (Japan)
관련내용	○ 일본의 경우 전체 후견신청이 약 36,000건이며, 이중에서 계약후견은 800건에 불과하며, 미성년후견은 24%에 수준에 있음.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견신청이 상당함. 주요 후견수요 욕구로는 예금 및 통장관리 등과 같은 금융업무의 지원이 4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비 관리부분이 20%임. ○ CRPD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일본의 후견관련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호주의 간호사법이 후견법으로 바뀔에 따라, 향후 일본의 후견관련 법의 발전방향은 호주의 사례를 모델링화 할 필요성이 상당함. ○ 일본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구성원은 당사자(A)와 지원인(B-공증인 및 변호사 등), 관리감독인(C)로 구성됨. C는 B에게 적절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필수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권리남용에 대한 예방활동을 수행함. ○ 일본은 관리감독인의 부재로 인하여, 지원인이 권한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고 다른 지원인(D)와 계약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은 공증인의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법률행위능력에 대하여 판단하여 후견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후견인의 업무권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함. 특히나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족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며, 당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경우에는 지원인의 권한을 심의를 통하여 제한함. ○ 일본의 계약후견관련법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나 의사결정능력

	이나 법률행위능력을 판단할 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등의 다양한 전문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판단될수 있도록 해야하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후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센터가 필요함.
주제	Tort of Persons Without Capacity for Liability And Adult Guardian's Liability Towards Victim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발표자	Weirong Qian (Japan)
관련내용	○ 일본 민법 제730조는 '권리무능력자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 제714조에서는 '권리무능력자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과 감독인, 행위 무능력자에 대한 구분이 정확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함. ○ 이에 대한 논란으로 개정의 작업이 있었으며, 개정직전에는 성년후견인은 배우자나 보호자라는 의미가 강했으며, 1차 개정에는 배우자는 후견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그 이상의 내용을 담지 못하였으며 민법 개정 이후 2017.8. 일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년후견인은 법적보호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후견인은 '보호자'가 아닌 '지원인(서포터즈)'의 의미를 부여함. ○ 만약 후견인을 '법적보호자'의 관점으로 두게 된다면, 일본 민법 제714조에 근거한 배상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후견인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감독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함. ○ 특히나 정신질환자의 친족과 법정후견인에 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함. 이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 앞서 이야기 한, 책임의 배상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후견감독인에 대한 역할이 상당하며, 단순히 후견인에게 모든 책임을 배상시켜야 하는 내용을 삭제되어야 함.
주제	Research on Law Application of Foreign-related Voluntary Guardianship (후견관련 법률에 대한 외국인의 적용)
발표자	Qinyu Liu (China)
관련내용	○ 외국인과 연계된 후견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현 상황 및 후견인의 권리 등의 다양한 연유로 적용해야 하는 법의 모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통상적으로 계약의 법적효과는 계약 당사자에 외국인이 있을 시에는 준거법의 효력이 문제이며, 의사자유와 민사행위에 대한 존중을 우선적으로 하고, 성인일 경우에는 준거법의 선택이 필요함. 특히나 의사자유에 대해서는 의사자치의 원칙. 즉,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문제상황이 발생함. 특히나 준거법이 단서가 되지 않는다면 피후견인의 이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수 있음. 이렇게 될 경우에는 CRPD의 원칙 및 각종 국제협약이나 규정을 확인하여 당사자(피후견인)에게 유익한 후견이나 보좌가 될 수 있는 규정이 필수적임.

○ 피후견인의 소송행위나 계약체결 및 해지 등의 상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후견사유의 종료 시에는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련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원만한 법적용이 필요함. 더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민사실체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면담록 및 방문기관

면담록 (1)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 Daniel Rosch(스위스 루체인 융합과학기술대학교)

2. 면담일시, 장소 : 2019.11.28., 화동정법대학

3. 면담내용 : 스위스의 후견시스템 관련

4. 질의응답내용

Q-1. 스위스에서 성인보호관련 기관의 개요

A-1. CPAP라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심리학 전공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부분에서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음.

Q-2. 스위스에서 성인보호에 대한 사건의 개입방법

A-2. 성인보호기관(CPAP)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도나 종료에 따라 다르다. 주로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하여 지원을 하지만, 무거운 사건이나 쟁점의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사건을 지원

Q-3. 유럽의 다른 국가에 있는 후견청 역할 수행여부

A-3. 성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명확하게는 '후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후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따로 있음. CPAP에서는 후견과 관련한 업무 및 법원과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연계 등도 수행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후견청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아님.

면담록 (2)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 Kenta Fukushima (일본 변호사)

2. 면담일시, 장소 : 2019.11.29., 르네상스 상하이 중산공원 호텔

3. 면담내용 : 일본 내 후견관련 시스템 문의

4. 질의응답내용

Q-1. 오사카 가정법원에 실시하는 ‘가정법원의 가이드 라인’의 의미

A-1. 법원에서 활용하는 가이드 라인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능력의 확인, 의사표시를 확인할 때 다양한 전문가의 검토과 개입 등을 의미

Q-2. 가정법원에서 ‘가이드라인’수행의 적합성

A-2. 신규인력의 증원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임. 또한 후견 관련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원에 신규조직을 만들어서 인력을 증원해야 함.

Q-3. 신규조직의 후견청 역할 수행여부

A-3. 신규조직은 기관의 의미보다는 후견관련 전문부서를 의미함. 현실적으로 가정법원 밖에 후견을 관리감독하거나 지원하는 지원을 추가적으로 건립한다거나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내에서의 부설조직이 적합함.

Q-4. 소규모 시민단체의 역할수행 방법

A-4. 일본 내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여, 전 지역에 점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시민단체에 다양한 직업(사회복지사, 변호사, 후견관련 전문가 등)을 다진 구성원들이 신규조직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에 방문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들은 다시 다른 기관에 방문하여 지원을 수행함.

방 문 기 관 (1-Shanghai united foundation)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 Shanghai united foundation 센터장

2. 면담일시, 장소 : 2019.11.30. 10:30

3. 면담내용 : 기관 사업 소개

- 상하이 최초의 독립적인 공공 보조금 조성 재단
- 중국 기부자와 단합된 풀뿌리 비영리 단체
- 중국의 비영리 단체를 위한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4. 기타 사항 : 기관소개 번역 자료 첨부

방 문 기 관 (2- Jishan Guardianship Group)

1. 대상인사 직위, 성명 : Li Xia (화동정법대학 교수, 결혼가족법 연구센터소장)

2. 면담일시, 장소 : 2019.11.30. 11:00

3. 면담내용 : 기관 사업 소개

- 상하이 진메이 케어 사회기구 (Shanghai Jinmei Care Social Organization) 에 가입 된 특별 실무 그룹으로 중국의 의도적(계약) 후견 시스템의 보편화, 서비스 정착 및 표준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 보호자로서 보호자와 2.감독자로서의 기초가 되는 사회 조직의 두 가지 지속적인 보호자 사례가 있음.
- 의도적(계약) 후견에 관한 상담을 하는 10 명 이상의 고령자가 있고, 그 중 3건이 모니터링(후속 처리) 중임.
- 후견인 감독제공 서비스, 장기 또는 임시제공 후견서비스, 기타 노후안전 추천 서비스 제공

4. 기타 사항 : 기관소개 번역 자료 첨부

Ⅲ. 종합적인 시사점 및 해외출장 소감

1) 중앙센터

-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년후견지원대회에서 발표된 서울선언의 이행(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최선의 선택의 관점으로의 전환)에 관해서는 당사국 간 추가합의 필요.
- 상대적으로 가족주의 정서가 강한 동아시아권에서 후견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에서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부모단체에서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스위스의 CPAP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비추어진 바와 같이, 사회복지 및 법률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당사자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가능함. 현재의 한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비춰봤을 때,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적 관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관리 및 의료적, 법적 등의 다양한 전문직군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로 함.
- 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화(미주리주) 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후견관련 법안에 후견인에 관한 책임과 권한 등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최근 한국에서 후견인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의 소재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책임과 권한에 관한 부분을 명시화 하여, 특정후견인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수행함에 원활함을 도모해야 함.
- 특정후견 사무업무 시, 재정관리의 영역에 대한 제한선의 설정이 필

요로 함. 이미 일본에서는 50만엔(한화기준: 500만원 내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가정법원에서도 당사자의 금융관리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한선의 도입이 필요.

-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당사자에 대한 접근 시에 다양한 방법이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이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필요가 예상되는 부분에서도 사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되는 것이 필요로 함.

2) 울산센터

- ‘2017년 동아시아 성년후견제도 국제학술대회(싱가포르)’, ‘2018년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한국 서울)’에 이어 성년후견 관련하여 참가국 각자의 후견관련 법, 제도,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볼 수 있었음. 특히 개최국인 중국의 후견제도관련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후견제도 도입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관점을 공유 할 수 있었음.
- CRPD 장애인의 법적능력 및 인권에 근거하여 한국에서도 조력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사업을 홍보.
- 세계적인 인구노령화 문제의 심각함을 파악했으며, 노령화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 인권교육지원 등을 수행하는 실무 중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판단, 의사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됨.
- 진산후견인그룹, 상하이 유나이티드기금의 기관소개를 들으며, 고령화 사회에 중국의 후견인제도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음.

3) 경기센터

- UN CRPD 제12조, 대체 의사결정 제도를 지원 의사결정제도로 변경 권고에 따른 각 국의 견해
- 현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포함하는 법적능력 안에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며, 적용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

- 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조력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음. 이 권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3년 도입한 후견제도를 잔존능력을 극대화하는 조력 의사결정제도의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의 후견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산과 신상에 관하여 피후견인의 법적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후견인이 이를 포괄하여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체 의사결정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 역시 대체가 아닌 지원 의사결정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IV. 첨부자료

○ 행사관련사진



○ 기관방문자료 번역본-1



SHANGHAI UNITED FOUNDATION
上海联劝公益基金会

Founded in 2009, Shanghai United Foundation (SUF)
2009 년 상하이 유니타리티 재단 (SUF) 설립

is the first independent public grant-making foundation in Shanghai
상하이 최초의 독립적 인 공공 보조금 조성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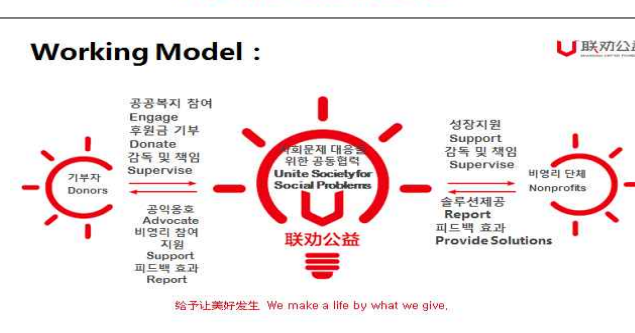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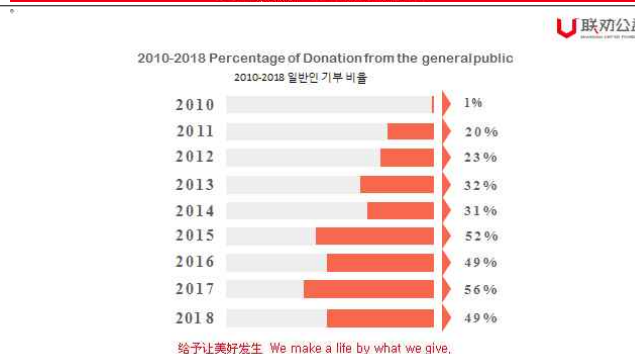
给予让美好发生 We make a life by wh



Mission
중국 기부자와 단합 된 풀뿌리 비영리 단체
Unite Donors and Support Grassroots Nonprofits in China

Vision
중국의 비영리 단체를 위한 안정적이고 협력 적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Create a Reliable, Cooperativ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for Nonprofits in China.

Values
즐거움 박애주의 다양한 박애주의 현명한 박애주의
Joyful philanthropy Diversified philanthropy Wise Philanthropy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듭니다.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小小勇士 Innovative combination of charity and education
자신과 교육의 혁신적인 조합

● a family based fundraising event launched by SUF in 2014
형태: 2014 년 부모 자녀 자선 걷기 모금 행사

● Children aged 2-12 will walk 5-10 kilometers with their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to raise money
形式: 2-12 세의 부모-자식 가족으로 걷기 하고 5-10km에 도전하고 자금을 모으십시오

Equal Care To both ends of Life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십시오
● Provide children with a joyful early-age nonprofit experience

상하이의 60 세 이상의 노인 복지 증진
● Enhance welfare of elders over Shanghai

영향: 5 년 동안 총 2112 명의 가족이 참여하고 310,000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30 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8,338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 Has engaged 2,121 families with over \$310,000 raised

您 PLAN—FOUNDING INFORMATION

2020 년 "가족 보호 지원"과 "노화 진화적 전환"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가정간병인 서비스 배경
At-home Nursing Service Background

가정간병인은 노인 간호의 핵심 강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At-home nurses will become one of the core forces of care for the elderly

현재, 장기 가족 간병인에 대한 상하이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 정책은 여전히 탐색 단계에 있습니다.
At present, the direct policy support for family long-term caregivers in Shanghai is still in the exploration stage

가정간병인에 대한 요구
At-home Nursing Service Requirements

노동 지원 서비스
Reducing labor service

심리 지원 서비스
Mental support service

경제 지원 서비스
Financial support service

고용 지원 서비스
Job support service

참고: 중앙민족 가정 보호자 관리 협회, 상하이 장기 가정 보호자 관리 자회 협회,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 Family Caregiver Alliance

「尽善监护」예정된 후견인을위한 훈련 과정 조직
JinShan Guardianship Group organized Intentional Guardianship training seminar



“의도적 후견인”교육 세션 4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약 1,000 명의 집중적인 후견인 재능 보유
Successfully held 4 training seminars on “Intentional Guardianship”. Already cultivated nearly 1,000 guardianship talents.

「尽善监护」感恩背后的支持与力量.....
우리의 모든 지원과 힘에 감사합니다...



중국법률학회 법학연구센터 연구실 교수
현재 중국법학회 법학연구센터 연구실 교수
Li Xia
director of the Marriage and Family Law Research Center of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10 년 전, 후견인은 동법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중국 정치 법 대학은 사회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로 제안되었다. 그런 다음 2017 년에 시행 된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제 33 조는 이 기관의 사람들의 잠재적 요구를 충족 시켰습니다. 현재 상하이에서 시작을 활발하고 지속적인 의도적 후견인 관행은 의도적 후견 제도를 보다 완전하고 지역적으로 만듭니다. 의도적 후견인은 법적인 실무자와 대중에게 친숙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법의 의식 개선과 발전에 동기를 부여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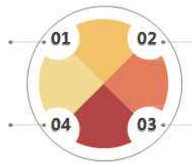
Ten years ago, the guardianship was introduced to China by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and was proposed as a theoretical research result to society. Then, Article 33 of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mplemented in 2017 has met and roused people's potential needs of this institution. At present, the lively and continuous intentional guardianship practice, which is originated in Shanghai, makes the intentional guardianship system more full and local. It is foreseeable that the intentional guardianship will be familiar to the legal practitioners and the masses. And it will eventually motivate the conscious improvement and advancement of legislation.

- Li Xia

「尽善监护」현재의 임무
The current missions of JinShan Guardianship Group

深入街道，收集和梳理老人的社会意定监护服务需求
사회의 의도적 후견 서비스의 대량 장려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류하여 지역 사회에 잘 들어가기

推进上海社会意定监护服务组织的成立
상하이에 사회적 의도적 후견 서비스 조직의 설립을 촉진



从需求和制度优势出发，优化社会意定监护服务体系
사회적으로 결정된 후견 서비스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필요와 제도적 이점으로 진행

加强意定监护在社区、街道、家庭中的普及和推广
지역 사회, 거리 및 가정에서 의도적 후견인의 대중화 및 홍보 강화

未来的「尽善监护」发展.....
The future of JinShan Guardianship Group



현재 중국의 의도적 후견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Good Guardianship" 팀은 법학자, 연구원, 실무자, 사회와 함께 공동체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가족 관련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탐구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손을 잡고 노년층의 존엄성을 보호하십시오!

At present, China's intentional guardianship is still in its infancy. Jinshan Guardianship Group is going deep into the families and community with responsibility, love and courage. We are to actively explore the wem- depth and professional services of China's intentional guardianship. Join us, with Jinshan Guardianship, let's guard the dignity of old age. Let's care for the ageing China!

2019. 12. 30.

제출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명노연 (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배창일 (인)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경 (인)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정영규 (인)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이주희 (인)